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45,311,155	49,359,335
일반회계	1,500,586,598	45,017,598
특별회계	144,724,557	4,341,737
공기업특별회계	114,680,000	3,440,4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132,749	1,563,98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932,958	1,587,98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614,293	288,429
기타특별회계	30,044,557	901,337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834	55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771,988	203,160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69,017	104,071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	9,521,546	285,646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280,172	308,405

제 2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2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해당없음)

제 5 조 2022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2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제 9 조 (간주처리)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